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저작재산권의 퍼블리시티권의 개정과 한류콘텐츠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협력 필요.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 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2년 7월 27일

청 원 인

성 명 : 유 희 성

주 소 : 서울시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유 희 성 (인) 외 8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서울시					
	성명 : 유희성의외 8인					
건명	저작권재산권의 초상 사용권의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					
소개년월일	2012년 7월 27일					
<p>소개의견</p> <p>청원인 유희성은 대한민국 모의 청소년 국회 국제협력상임의원 이다. 2012년 7월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개최한 임시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안건은 『국제 사회에서의 한류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초상 사용권』 이다.</p> <p>협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『한류에 대한 초상 사용권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국내만 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여 해외에서 침해되고 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다.』</p> <p><선구문대조표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현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정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<p>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>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padding: 5px;"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제 75조(초상 사용권) 실연자는 그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 (개정)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제 76조 제 75조에 의거하여 초상 사용권이 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익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)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현행	개정문	<p>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></p>	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제 75조(초상 사용권) 실연자는 그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 (개정)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제 76조 제 75조에 의거하여 초상 사용권이 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익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)</p>
현행	개정문					
<p>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></p>	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제 75조(초상 사용권) 실연자는 그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 (개정)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제 76조 제 75조에 의거하여 초상 사용권이 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익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)</p>					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2009년에는 캄보디아의 4인조 여성그룹 RHM이 원더걸스의 댄스곡인 '노바디'의 노래와 안무 그리고 의상 및 고유 컨셉을 그대로 베껴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. 이들은 노랫말을 단지 크메르어로 바꿔 불렀을 뿐, 아무런 제재없이 원더걸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.

한류의 열광적인 인기 때문에 더욱 표절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. 에콰도르의 한 여가수는 엠블랙의 데뷔곡 'oh yeah'와 상당 부분 비슷한 노래를 내놓아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. 멜로디는 물론 안무까지 흡사하다. 이외에도 세르비아의 한 여가수의 노래는 샤이니의 '루시퍼'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, 캄보디아의 한 남성그룹은 샤이니의 '링딩동'을, 우즈베키스탄의 가수는 소녀시대의 '소원을 말해봐'를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.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류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토대인 초상 사용권이 필요하다.

2. 주요골자

제73조(방송권)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4조(전송권)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75조(초상 사용권) 실연자는 그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 (개정)

제 76조 제 75조에 의거하여 초상 사용권이 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익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)

제77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>

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문
<p>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></p>	<p>제 75조(초상 사용권) 실연자는 그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 (개정)</p> <p>제 76조 제 75조에 의거하여 초상 사용권이 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익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)</p>

청원인 성명 : 유희성

청원인 주소 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10-8번지

청원인 전화번호 : 010-6234-6761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

.....

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4. 청원서

연 번	성 원 명명	날 인	주 속 정 당	쏘속위원회	날선 계인구	비 비 코

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